

제 2377호
2015. 06. 24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
 편집인: 공 보 실 장 장 운 기
 전화: 3396-4965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- 고 시
 제2015-45호: 도로명주소 고시 2
- 공 고
 제2015-450호: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시송달 공고 3
 제2015-451호: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공람공고 5
 제2015-455호: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65 / FAX.(02)3396-9024
 ● 구보는 수시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
람												

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45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우리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6월 2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4길 5-32외 1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20-23외 2필지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4길 5-32	2010.06.28.	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20-17외 2필지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4길 5-40	2010.06.28.	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1~5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5. 06. 2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-450호

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시송달 공고

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2-12호(2012.2.3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손실보상 협의문 등을 통지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5. 6. 23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사 업 명 :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, 11,392.6㎡
3. 사업시행자 :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배종일)
4. 공고기간 : 2015. 6. 24. ~ 2015. 7. 8.
5. 송달대상 및 내용 : 별첨
6. 협의기간 : 공고일 익일부터 15일간
7. 협의장소 :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
(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42-1, 2층 / ☎ 02-356-2480)
8. 협의방법 : 관계법령에 따라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사업시행자와 당사자 간의 직접 협의 (기간 내 서면, 구두, 전화통지로도 협의가능)
9. 보상의 시기, 방법 및 절차 : 협의성립 시 현금 직접보상
10.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: 보상협의 후 추후 통보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(☎ 02-3396-5733) 및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 02-365-248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첨]

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

○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

연번	소재지		구분	지목 (물건의종류)	이용상황 (구조)	면적 (수량)	송달지	성명	비고
1	중구 만리동2가	10-19	물건	주택 (1층)	세넨브릭 기와	41.90	서울 중구 만리동2가 10-19	이수래	물건소유자
				가추 (1층)	목조 썬라이트	7.73	서울 중구 만리동2가 10-19	이용득	소유자 이수래의 관계인
				세면장 (1층)	관넬	2.00	서울 중구 만리동2가 10-19	이용현	소유자 이수래의 관계인
				대문	목조 (L=1.3,H=2.1)	1식	서울 중구 만리동2가 10-19	이용숙	소유자 이수래의 관계인
				담장	목조 (L=5.0,H=2.0)	1식	서울 중구 만리동2가 10-19	이용옥	소유자 이수래의 관계인
							서울 중구 만리동2가 10-19	이용순	소유자 이수래의 관계인
							서울 중구 만리동2가 10-19	이용자	소유자 이수래의 관계인
							서울 중구 만리동2가 10-19	이용기	소유자 이수래의 관계인
							서울 중구 만리동2가 10-19	이성구	소유자 이수래의 관계인

(이하 여백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-451호

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공람공고

1. 202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존의 철거/수복형에서 철거형으로 정비수법이 변경된 을지로3가 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3-735호(2013.11.13.)로 공람공고를 하였던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과 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 방안에 맞춰 정비구역 지정안을 재작성 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.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재생과 ☎3396-5773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06월 24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

1)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조서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신규	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	중구 수표동 35-13번지 일원	-	증)42,641.6	42,641.6	

2) 지정 사유

202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존의 철거/수복형에서 철거형으로 정비수법이 변경된 을지로3가 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.

나.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

1)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(해제) 조서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해제	수표 지구단위계획구역	중구 입정동 237일대	71,353.0	감)71,353.0	-	

2) 해제사유

가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41호(2004.7.26)로 수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255호(2005.8.25) 수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·고시된 구역으로,

나) 202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(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01호)의 토지이용계획상 철거/수복형에서 철거형으로 정비수법이 변경되어 도심지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기 결정된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(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06호)과 본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포함한 전체 “수표 지구단위계획구역”을 해제코자 함.

다)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내 기 결정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한 사항은 변경없이 유지함.

다. 용도지역·지구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1) 용도지역

구 분		면 적(m ²)			비 율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42,641.6	-	42,641.6	100.0	-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42,641.6	-	42,641.6	100.0	

2) 용도지구

가) 미관지구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면적(m ²)	연장(m)	폭원(m)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①	미관지구	중심지	청계천로변	9,240	770	12	1973.7.4 (건설부고시 제 290호)	
기정	①	미관지구	중심지	돈화문로변					
기정	①	미관지구	중심지	을지로변					

나) 방화지구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면적(m ²)	연장(m)	폭원(m)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①	방화지구	-	수표동 27-1 일대	55,151 (42,641.6)	770	12	1973.8.1 (건설부고시 제 317호)	

라.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본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1) 도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1	1	22~25	집산도로	1,870 (50)	종로구 와룡동 5-14	중구 필동1가 40	일반도로	-	2001.8.6 (서고 제146호1))	돈화문로
변경	중로	1	1	22~25	집산도로	1,870 (50)	종로구 와룡동 5-14	중구 필동1가 40	일반도로	-	-	도로폭원 일부변경
기정	중로	2	7	15	보조 간선 도로	850 (174)	을지로2가	낙원운동장	일반도로	-	2005.8.25 (서고 제255호)	수표 다릿길
변경	중로	2	7	15	집산도로	850 (174)	을지로2가	낙원운동장	일반도로	-	2005.8.25 (서고 제255호)	도로폭원 일부변경
기정	중로	3	1	12~18.5	집산도로	5,390 (128)	세종로광장	고산자로	일반도로	-	2003.5.28 (서고 제130호)	청계천로
변경	중로	3	1	12~18.5	집산도로	5,390 (128)	세종로광장	고산자로	일반도로	-	-	도로폭원 일부변경
기정	중로	3	2	12	집산도로	42	을지로 3가 104-13	을지로 3가 104-13	일반도로	-	2005.8.25 (서고 제255호)	
기정	중로	3	3	13	집산도로	87	을지로 3가 335-1	입정동 262	일반도로	-	2010.8.26 (서고 제306호)	
변경	중로	3	3	13	집산도로	177	을지로 3가 5-4	입정동 262	일반도로	-	-	도로연장 변경
기정	소로	1	1	10	집산도로	126	을지로 3가 104-13	을지로 3가 96-2	일반도로	-	2010.8.26 (서고 제306호)	
기정	소로	2	1	8	국지 도로	90	을지로2가 88-4	장고동 22-20	일반도로	-	2007.5.17 서고제32호	
변경	소로	1	-	10	집산도로	90	을지로2가 88-4	장고동 22-20	일반도로	-	-	도로폭원 변경
기정	소로	2	-	5~8.5	집산도로	-	을지로23가, 장고동,수표동, 초동각 일부	을지로23가, 장고동,수표동, 초동각 일부	일반도로	-	1964.6.11 (서공제154호2))	기타도로시 설
변경	소로	1	-	10	집산도로	307	을지로3가 95-5	을지로3가 56-11	일반도로	-		
기정	소로	2	-	5~8.5	집산도로	-	을지로23가, 장고동,수표동, 초동각 일부	을지로23가, 장고동,수표동, 초동각 일부	일반도로	-	1964.6.11 (서공제154호)	기타도로시 설
변경	소로	3	-	6	집산도로	42	수표동 11-3	수표동 11-12	일반도로	-	-	일부구간 폐지
기정	소로	2	3	8	국지 도로	108 (58)	수표동 50-1	장고동 22-4	일반도로	-	2007.5.17 서고제32호	
변경	소로	2	3	8	국지 도로	155 (10 5)	수표동 50-1	장고동 22-4	일반도로	-	-	연장변경
신설	소로	3	-	6	특수 도로	42	을지로 3가 65-2	을지로 3가 65-19	보행자 전용도로	-	-	노선신설

※ ()는 구역 내의 연장임

2) 주차장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①	주차장	수표동 11-9 일대	1,368.8	감)1,368.8	-	2005.8.25 (서고 제255호)	

3) 공 원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①	공원	역사공원	을지로2가 101-43일대	-	증)1,551.0	1,551.0	-	-
신설	②	공원	역사공원	수표동 11-4 일대	-	증)1,446.0	1,446.0	-	-
폐지	①	공원	근린공원	수표동 11-9일대	1,368.8	감)1,368.8	-	2005.8.25 (서고 제255호)	주차장과 중복결정

4) 공공공지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①	공공공지	수표동 27-3 일대	200.3	감)200.3	-	2005.8.25 (서고 제255호)	

5) 공공청사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			
신설	①	공공청사	동 주민 센터	을지로3가 65-10일대	-	증)736.5	736.5	60% 이하	800% 이하	80m 이하	-	

※ 현 을지로동주민센터의 위치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

주1) 종로1류(돈화문로)는 도로결정조서의 누락으로 도로인정공고(서울시공고 제2001-646호, 2001.8.6)의 도로연장 및 기종점을 기준으로 작성

주2) 서울시공고 제1964-354호(1964.6.11)는 서울특별시 제1중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(을지로2,3가)에 의해 기타도로 시설로 결정된 사항임

6) 청소년수련시설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 (㎡)		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			
신설	①	서울시청소년수련관	청소년 수련시설	수표동 27-2일대	-	증)991.4	991.4	60% 이하	800% 이하	80m 이하	-	

※ 존치되는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

마. 도시환경정비계획

1)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율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-	증) 42,641.6	42,641.6	100.0	-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-	증) 16,016.7	16,016.7	37.6	-
	도 로	-	증) 11,291.8	11,291.8	26.5	보행자 전용도로포함
	공 원	-	증) 2,997.0	2,997.0	7.0	역사공원1(1,551㎡), 역사공원2(1,446㎡)
	공공청사	-	증) 736.5	736.5	1.7	동주민센터
	청소년수련시설	-	증) 991.4	991.4	2.3	존치
획지 (대지)	소 계	-	증) 26,624.9	26,624.9	62.4	-
	제1지구	-	증) 2,230.0	2,230.0	5.2	-
	제2지구	-	증) 1,645.8	1,645.8	3.9	-
	제3지구	-	증) 1,078.9	1,078.9	2.5	-
	제4지구	-	증) 1,567.1	1,567.1	3.7	-
	제5지구	-	증) 3,231.4	3,231.4	7.6	-
	제6지구	-	증) 3,544.2	3,544.2	8.3	-
	제7지구	-	증) 2,013.3	2,013.3	4.7	-
	제8지구	-	증) 2,000.1	2,000.1	4.7	-
	제9지구	-	증) 1,619.5	1,619.5	3.8	-
	제10지구	-	증) 1,916.6	1,916.6	4.5	-
	제11지구	-	증) 1,356.9	1,356.9	3.2	-
	제12지구	-	증) 2,845.5	2,845.5	6.7	-
제13지구	-	증) 1,575.6	1,575.6	3.7	-	

2) 획지 및 건축시설계획

구분	구역명	위 치	획지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(%)			높이(m)		주용도	비고
					기준	허용	상한	기준	최고		
신규	제1지구	수표동 56-9 일원	2,230.0	60이하	600 이하	800 이하	1,000 이하	70	80 이하	업무, 주거복합, 숙박시설	
신규	제2지구	수표동 56-1 일원	1,645.8	60이하	600 이하	800 이하	1,000 이하	70	80 이하	업무, 주거복합, 숙박시설	
신규	제3지구	을지로2가 101-1 일원	1,078.9	60이하	450 이하	720 이하	800 이하	70	80 이하	업무, 주거복합, 숙박시설	
신규	제4지구	을지로2가 101-2 일원	1,567.1	60이하	600 이하	800 이하	1,000 이하	70	80 이하	관광숙박시설	
신규	제5지구	수표동 11-9 일원	3,231.4	60이하	600 이하	800 이하	1,000 이하	70	80 이하	업무, 주거복합, 숙박시설	
신규	제6지구	수표동 35-10일원	3,544.2	60이하	600 이하	800 이하	1,000 이하	70	80 이하	업무, 주거복합, 숙박시설	
신규	제7지구	수표동 27-1일원	2,013.3	60이하	600 이하	800 이하	1,000 이하	70	80 이하	업무, 주거복합, 숙박시설	
신규	제8지구	을지로3가 5-6 일원	2,000.1	60이하	600 이하	800 이하	1,000 이하	70	80 이하	업무시설	
신규	제9지구	을지로3가 5-1 일원	1,619.5	60이하	600 이하	800 이하	1,000 이하	70	80 이하	업무시설	
신규	제10지구	을지로3가 95-12 일원	1,916.6	60이하	600 이하	800 이하	1,000 이하	70	80 이하	업무시설	
신규	제11지구	을지로3가 95-1 일원	1,356.9	60이하	600 이하	800 이하	1,000 이하	70	80 이하	업무시설	
신규	제12지구	을지로3가 65-14 일원	2,845.5	60이하	600 이하	800 이하	1,000 이하	70	80 이하	업무시설	
신규	제13지구	을지로3가 118-1 일원	1,575.6	60이하	600 이하	800 이하	1,000 이하	70	80 이하	업무시설	

※ 사업시행시 건축물 주용도를 관광숙박시설로 계획할 경우 상한용적률은 1,200% 적용

3)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

구 분	시행 면적 (㎡)	대지 면적 (㎡)	정비기반 시설면적 (㎡)	계획기반 시설내 공공용지 (㎡)	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(㎡)	순부담면적(㎡)			순부담율 (%)	비 고	
						소 계	도로, 공원, 공공청사	공동 분담			
을지로3가구역	42,641.6	26,624.9	16,016.7	10,548.3	1,566.8	4,001.3	866.3	3,135.0	13.1%		
사업 시행 지구	소계	32,476.8	26,624.9	5,851.9	283.8	1,566.8	4,001.3	866.3	3,135.0	13.1%	평균 순부담율 13.1% (3지구 제외시 13.5%)
	제1지구	2,579.3	2,230.0	349.3	-	-	349.3	137.0	212.3	13.5%	
	제2지구	1,902.7	1,645.8	256.9	-	-	256.9	128.0	128.9	13.5%	
	제3지구	1,078.9	1,078.9	-	-	-	-	-	-	-	
	제4지구	1,812.7	1,567.1	245.6	-	-	245.6	94.2	151.4	13.5%	
	제5지구	4,208.6	3,231.4	977.2	-	471.2	506.0	-67.6	573.6	13.5%	
	제6지구	4,495.5	3,544.2	951.3	12.0	384.3	555.0	-334.2	889.2	13.5%	
	제7지구	2,529.1	2,013.3	515.8	-	200.3	315.5	-113.8	429.3	13.5%	
	제8지구	2,313.5	2,000.1	313.4	-	-	313.4	63.6	249.8	13.5%	
	제9지구	1,873.3	1,619.5	253.8	-	-	253.8	112.2	141.6	13.5%	
	제10지구	2,217.0	1,916.6	300.4	-	-	300.4	269.8	30.6	13.5%	
	제11지구	1,569.5	1,356.9	212.6	-	-	212.6	69.4	143.2	13.5%	
	제12지구	3,797.3	2,845.5	951.8	-	505.9	445.9	397.9	48.0	13.5%	
	제13지구	2,099.4	1,575.6	523.8	271.8	5.1	246.9	109.8	137.1	13.5%	
존치시설1	991.4	-	991.4	994.2	-	-	-	-	-	형소년 수련시설	
존치시설2	9,173.4	-	9,173.4	9,173.4	-	-	-	-	-	도로 등	

주1) 순부담율 = 순부담면적 / 시행구역면적 - 계획기반시설내 기존공공용지 -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

주2) 순부담면적 중 “공동분담” 면적의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함

- 기준 : 1) 이벽 생가터 부지(역사공원2 및 도로)를 우선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
2) 혜민서 터 부지(역사공원1 및 도로)를 2필지 이상 확보할 경우 을지로변과 이면부의 필지를 함께 확보함.

3) 사업시행이 빠른 구역부터 “공동분담” 해당하는 필지는 선택적 확보 가능하되, 5,6,7지구는 역사공원2를 확보하고, 그 외 시행지구가 역사공원1을 확보하도록 함.

(단, 구역별 공동분담 면적 이상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관리청과 협의 후 조정 가능)

주3) 제3구역은 기정 수표 지구단위계획 내용(서고 제2012-217호, 2012.8.9)에 따르되 원활한 교통개선을 위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하여 도로시설 조성

4) 기타사항 :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상세계획에 대하여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(안) 도서로 같음.

바. 공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

사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73)

아. 관계서류 : 생략(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-455호

이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
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6월 2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를 정비하고 SNS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및 SNS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개정된 법률 적용
 -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⇒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으로 개정
 - 조례에 인용된 같은 법 제2조제2호 ⇒ 제2조제1호로 개정
-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
 - ⇒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으로 법률명 띄어쓰기 정비
- 홈페이지 등 이용 참여행사 관련규정 보완
 - SNS 활성화 자문단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
 - 참여자에게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 지급 근거 보완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
 - 띄어쓰기 정비
 - 용어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전산정보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문 의전화: 3396-4704, FAX: 3396-8639, 메일: jkdong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규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”을 “사용하는 용어의 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이용자 간”을 “이용자 간”으로, “주고받을”을 “주고 받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민원사무중”을 “민원사무 중”으로, “처리되는”을 “처리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”를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자료관리담당자”를 “자료관리 담당자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알권리”를 “알 권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운영주관부서(이하 “시스템운영부서”라 한다), 홈페이지관리부서”를 “운영주관부서(이하 “시스템 운영부서”라 한다), 홈페이지 관리부서”로, “필요시”를 “필요 시”로, “위탁관리”를 “위탁하여 관리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시스템운영부서”를 “시스템 운영부서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시스템운영부서”를 “시스템 운영부서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정보제공시”를 “정보제공 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정보관리담당자”를 각각 “정보관리 담당자”로, “자료관리체계”를 “자료관리 체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정보관리담당자”를 “정보관리 담당자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없은”을 “없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신청대상민원”을 “신청대상 민원”으로, “첨부서류”를 “붙임서류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본문 중 “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”를 “민원은 접수”로, “사이버 민원실”을 “전자민원창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해”를 “위하여”로, “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”를 “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제2항”을 “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”를 “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참여등”을 “참여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4조의2의 제목 “홈페이지 이용 참여행사 운영”을 “홈페이지 등 이용 참여행사 운영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2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구정참여 활성화 및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하거나 SNS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개최 및 자문단 운영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제17조제3항 중 “위탁관리”를 “위탁하여 관리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시스템운영부서”를 “시스템 운영부서”로, “강구해야”를 “마련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스템운영부서”를 “시스템 운영부서”로, “사고발생시”를 “사고발생 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<u>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u>	제2조(정의) ----- <u>사용하는 용어의 뜻은-----.</u>
1. “인터넷”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<u>이용자간</u> 에 다양한 정보를 <u>주고받을</u>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<u>이용자 간</u> ----- <u>주고받을</u> ----- -----.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4. “인터넷 민원”이란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중구”라 한다)가 특별히 규정한 <u>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</u> 을 말한다.	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민원사무 중</u> ----- ----- <u>처리하는</u> -----.
5. “개인정보”란 「 <u>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.	5. ----- 「 <u>개인정보 보호법</u> 」 제2조제1호----- -----.
6. “비밀번호”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<u>자료관리담당자</u>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.	6. ----- <u>자료관리 담당자</u> ----- -----.
7. (생략)	7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인터넷시스템 구축·운영) ①	제3조(인터넷시스템 구축·운영) ①

(생략)

②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전자우편 서비스 이용

6. (생략)

7.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

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(이하 “시스템운영부서”라 한다), 홈페이지관리부서 (이하 “관리부서”라 한다),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(이하 “담당부서”라 한다)를 지정·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·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.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4조(인터넷시스템 개선)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
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각호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6. (현행과 같음)

7.-----알 권리-----

③ -----
-----운영 주관부서
(이하 “시스템 운영부서”라 한다), 홈페이지 관리부서-----

-----필요시-----
-----위탁하여 관리-----
-----.

-----시스템 운영부서-----

-----.

제4조(인터넷시스템 개선) 시스템 운영부서-----

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홈페이지 정보관리) ① (생략)

②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 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③담당부서의 장은 항목별 정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의 정보를 관리하며, 정보관리담당자가 교체된 경우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④담당부서의 정보관리담당자는 제공한 자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·갱신하여야 하고,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협조 요청한다.

제6조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 ① (생략)

-----.

제5조(홈페이지 정보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정보제공 시-----

-----.

③ -----정보관리 담당자-----
-----정보관리 담당자-----
-----자료관리 체계-----
-----.

④ -----정보관리 담당자-----

-----.

제6조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담당부서의 장(별도의 담당부서가
 없은 경우 관리부서의 장)은 홈페이지
 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
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
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
 있다. 다만,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
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
 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
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
 를 통지하여야 한다.

1. ~ 9. (생 략)

제10조(인터넷 민원처리) ① 인터넷 신
 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
 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
 의 종류,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
 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
 한다.

② (생 략)

제11조(민원처리 공개) ① (생 략)

②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
 터, 처리과정,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
 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
 만,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
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

② -----없
는

 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인터넷 민원처리) ① -----신
청대상 민원-----붙임서류

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민원처리 공개) ① (현행과 같
 음)

② -----민원은 접수-----
 -----전자민
원창구-----

 -----.

③ -----

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2조(민원상담 기능 제공) ①·② (생략)

③민원상담은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 처리를 한다.

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

제13조(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)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

---위하여-----
-----위하
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-----
-----.

④ -----

-----지체 없이-----
-----.

제12조(민원상담 기능 제공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-----

-----.

제4장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

제13조(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) ① --
-----참여
등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「민

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
전체 자료와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
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
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
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-----.